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4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김 건 · 김기용 · 정성국
조경태 · 엄태영 · 안상훈
서일준 · 신동욱 · 최보운
이소희 · 박수영 · 김예지
김은혜 · 권영진 · 강대식
한지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톱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체포·구속·유치의 개시일 및 종료일
 2.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3. 공판의 일시·장소
 4. 재판의 결과
 5.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형(刑)과 보호관찰의 개시일 및 종료일
 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 또는 보호관찰이 집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의 통지) ①</u> <u>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체포 · 구속 · 유치의 개시일 및 종료일</u> <u>2.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u> <u>3. 공판의 일시 · 장소</u> <u>4. 재판의 결과</u> <u>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刑)과 보호관찰의 개시일 및 종료일</u> <u>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p><u>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